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의 입학정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의과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4항에 따른 지역의 인구, 의료취약지 분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2와 같다.

⑤ 의과대학의 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차년도 입학전형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차년도 입학전형으로 이월한 미충원 인원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인원과 별도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차차년도 입학전형에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입학전형 시 적용된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인원의 자퇴·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으로 편입학을 실시하는 경우 편입학 실시의 원인이 된 결원의 입학전형 시 적용된 법 제4조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과 동일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⑨ 법 제4조제4항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료 관련 과정
2. 지역 내 실습과정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 및 지원 등에 관한 과정
4.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과정
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통합지원 등에 관한 과정

6. 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의과대학의 장이 인정한 과정

⑩ 제9항에 따른 교육 실시·운영·학점 및 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조(학비등의 지원)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 교재비, 지급 물품비 및 실습비
3. 기숙사비 및 급식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
4. 그 밖에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비등(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학비등의 지원은 학기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학비등의 지원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휴학

2. 유급

3. 정학 및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5조(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전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질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장애인등록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3. 그 밖에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6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의 감면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 전액 감면
2. 제2항제3호의 경우 : 다음의 공식에 따른 금액

$$\text{감면 금액} = \text{반환금} \times \frac{\text{의무복무기간(월)}}{1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반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기한을 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의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반환금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반환의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 또는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반환의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서 월 단위로 분할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⑦ 반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반환의무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납부 및 산정 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무복무지역) 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3과 같다.

제7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역 내 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기간은 법 제1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이행 여부 확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3. 법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학의 장(의과대학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금의 납부·산정·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중학교 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다목은 2027학년도에 중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 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지역 및 의과대학(제2조제1항 관련)

의과대학 소재지 구분	해당 의과대학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단국대, 순천향대
2) 충청북도	충북대, 건국대
3) 광주광역시	전남대, 조선대
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 원광대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 울산대, 경상대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원주), 가톨릭관동대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제2조제4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고등학교 소재지의 범위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충청남도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충청남도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청남도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북도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권(여수시)
	전라남도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전라남도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전라남도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전라남도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권(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권(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북도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경상북도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상북도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북도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경상남도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상남도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권(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권(서귀포시)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나.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인접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고등학교 소재지의 범위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4)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가목 및 나목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소재지의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의무복무지역(제6조 관련)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선발된 자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고등학교 소재지의 범위	의무복무 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좌동
	충청남도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좌동
	충청남도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좌동
	충청남도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좌동
	충청남도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좌동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좌동
	충청북도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좌동
	충청북도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좌동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좌동
	전라남도 여수권(여주시)	좌동
	전라남도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좌동
	전라남도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좌동
	전라남도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좌동
	전라남도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좌동
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좌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권(군산시)	좌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권(익산시)	좌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좌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좌동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좌동
	경상북도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좌동

	경상북도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좌동
	경상북도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좌동
	경상북도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좌동
	경상북도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좌동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좌동
	경상남도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좌동
	경상남도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좌동
	경상남도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좌동
	경상남도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좌동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좌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좌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좌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권(강릉시)	좌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좌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좌동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시)	좌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권(서귀포시)	좌동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좌동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좌동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좌동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좌동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좌동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좌동

나.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인접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선발된 자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고등학교 소재지의 범위	의무복무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공주권 (공주시, 계룡시),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 안군),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 군),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권(충주시, 괴 산군, 음성군),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여수권(여주시),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4)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권(군산시), 익산권(익산시),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권(강릉시),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시), 서귀포권(서귀포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기준,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나. 제1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 법 제7조제4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이 없는 경우(수련기간 동안으

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경우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제4호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포괄2차 병원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병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100	300	500
2.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의사의 근무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자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	200	200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200	200